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 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이 유
□ 목적 ○ 농축수산물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	□ 목적 ○ 농축수산물,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------- ---------- ----------	○ 고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반영
□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○ 인정품목([별표 1] ~ [별표 5] 참조) <신 설>	□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○ ---------- ~ [별표 6] ---- ⑥ [별표 6] 재활용 공산품: 25개 품목	○ ‘재활용 가루 세탁비누’ 등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품목 25개를 고시 적용 대상(별표 6)으로 지정
○ 인정서류 <신 설>	○ 인정서류 재활용 공산품 | ⑲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 |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(재활용제품의 규격·품질기준) |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 인증원 | 서식19	○ ‘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’를 고시 적용 대상 서류(서식 19)로 지정